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662 발의연월일: 2020. 10. 26.

발 의 자:김용민·백혜련·김남국

김종민 · 박범계 · 박주민

소병철・송기헌・신동근

최기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(법률 제16863호, 2020. 1. 14. 공포, 2020. 7. 15. 시행)됨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불법재산 등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수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위하여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7조제1항·제4항)

법률 제 호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검찰총장"을 "검찰총장,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"검찰총장,"을 "검찰총장,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,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정 혂 행 개 아 제7조(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7조(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) 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공) ① -----불법재산·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관련 된 형사사건의 수사, 조세탈루 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, 조 세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, 관 세 범칙사건 조사, 관세탈루혐 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, 관세 체납자에 대한 징수업무 및 「정치자금법」 위반사건의 조 사, 금융감독업무 또는 테러위 험인물에 대한 조사업무(이하 "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"이라 한다)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 (이하 "특정금융거래정보"라 한 다)를 검찰총장, 국세청장, 관 -----검찰총장, 고위공직자범 세청장,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죄수사처장-----금융위원회 또는 국가정보원장 에 제공한다. 1. ~ 3. (생략) 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·③ (생 략)

④ 검찰총장, 경찰청장, 해양경찰청장, 국세청장, 관세청장, 중앙선거관리위원회, 금융위원회, 국가정보원장(이하 "검찰총장등"이라 한다)은 특정형사사건의 수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

⑤ ~ ⑫ (생 략)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④ 검찰총장, 고위공직자범죄수
사처장,
(5) ~ (12) (혀해과 간은)